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6년 11월 9일

군산시 조례 제2481호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군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군산시가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교류와”를 “군산시가”로, “위하여”를 “위하여 외국 도시와”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우호협력관계“란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와 외국도시간”을 ““우호교류협력”이란 군산시와 외국 도시 간”으로, “자매결연관계를”을 “자매결연을”로, “교류협력관계”를 “국제교류협력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매결연관계“란 시와 외국도시간의 우호협력관계가”를 ““자매결연”이란 군산시와 외국 도시 간의 우호교류협력이”로, “체결하는 교류협력관계”를 “결연을 맺는 국제교류협력 관계”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시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

분 중 “시가 외국도시와의”를 “군산시(이하“시”라 한다)가 외국 도시와”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제화 전략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 방향
2. 도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
3.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교류 전략
4. 민간 차원의 각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 및 국제 민간교류 네트워크 구축
5. 국제통상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 방안
6.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7.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제8조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시장은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매도시 또는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
2. 외국 도시 간 협력 및 연대 사업의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 기구 가입 및 새로운 기구의 창설 주도
3. 학술・문화・예술・관광・스포츠・경제산업・복지・교육・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

4. 민간단체 및 군산시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교육 등 국내·외 활동 지원 및 민간단체의 국제 민간기구 등 가입에 대한 행정적 지원
5. 청소년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국내·외 교류 활동 주관·지원 및 참가
6. 국제통상 및 관광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국제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국제교류협력사업의 지원)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시의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비영리 목적으로 시와 국제교류협력 관계에 있는 외국 도시 또는 단체와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3. 민간 차원에서 제6조제3호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통하여 시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종전의 제6조)제2항 중 “투자비용, 연관 파급효”를 “투자 비용, 연관 파급 효”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자매도시 등)”을 “(자매결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외국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협력도시협정”을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우호협력 협정(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매 결연과 우호교류”를 “자매결연 등”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결연 등의 제의)”를 “(자매결연 등의 제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외국도시”를 “외국 도시”로, “송부 받아 양도시의 행정규모, 지역여건”을 “송부받아 양 도시의 행정 규모, 지역 여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도시”를 “외국 도시”로, “교류여건”을 “교류 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 교류여건 등”을 “등의 교류 여건”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역여건”을 “지역 여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특수성”을 “지역 특수성”으로, “상호보완성”을 “상호 보완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협력 및 우호증진”을 “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특수여건”을 “특수여건”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외국도시”를 “외국 도시”로,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7조”를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우호교류를”을 “우호협력 협정을”로 한다.

제13조 중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를 “자매결연 등”으로, “조인식을 갖고”를 “체결식을 갖고 협약서에”로 한다.

제14조 전단 중 “도시간”을 “도시 간”으로, “발생 하거”를 “발생하거”로,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를”을 “자매결연 등을”로 한다.

제15조 중 “우호협력도시와의”를 “우호협력도시”로 한다.

제4장(제17조부터 제2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해외사무소 설치 및 명예자문관 운영

제17조(해외사무소 설치) ① 시장은 원활한 국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하여 외

국 주요 도시에 군산시해외사무소(이하 “해외사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외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 도시와 교류협력 지원
2. 현지 시장 동향 수집·제공
3. 관내 중소기업 등의 수출 확대를 위한 시장조사·상담 및 지원활동
4. 외국 기업의 관내 유치 활동
5. 시정 및 문화·관광의 해외 홍보
6. 해외 교포와의 협조체계 구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해외사무소 운영) ① 시장은 해외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 간의 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소속 공무원 파견 등) ① 시장은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외사무소에 파견될 사람에 대한 파견 방법 및 근무 요령 등을 별도로 정한 사항 이외는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해외사무소에 현지 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명예자문관 위촉 및 자격)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통상업무

추진 등을 위하여 자매도시·우호협력도시 및 교류가 필요한 지역과 국내에 군산시 국제관계 명예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국제교류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사람
2. 해외 해당 도시의 유력인사
3. 글로벌 기업의 임원 등 경제인
4. 교민 사회의 각종 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고 재외공관과 협조가 가능한 사람
5. 미주,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 거주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
7. 그 밖에 투자유치, 해외시장 개척 활동 등 시 차원의 지방외교 및 통상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제21조(임기 및 해촉) ①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문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2. 자문관으로서 제22조 및 제23조의 직무를 소홀히 하여 시정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2조(역할) 자문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시의 자문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시의 해외홍보 지원

2. 외국 선진행정 사례 및 무역·해외시장 동향 등 주요 정보 수집·제공

3. 외국 기관·기업·민간단체 등 도시 간의 협력사업 지원

4. 각종 국제행사와 국제기구 유치에 적극적인 지원

5. 해외 바이어 연결 등 통상사업 지원

6. 그 밖에 경제·문화·교육·기술 등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협력

제23조(품위유지) 자문관은 시와 관련한 직무수행에 있어 시의 민간 외교관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의 이익에 위배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4조(실비 보상 등) ①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사무와 관련하여 자문관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 요청하면 증빙서류를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은 제1항에 따라 발생된 경비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갖추어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 내용이 거짓이거나 증빙서류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를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군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가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교류와 국제경쟁력을 갖춘 일류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군산시가 ---------- 위하여 외국 도시와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우호협력관계"란 군산시(이하 “시” 라 한다)와 외국도시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로서 자매결연관계를 체결하기 이전의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2. "우호교류협력” 이란 군산시와 외국 도시 간---------- 자매결연을 ---------- 국제교류협력관계--.
3. "자매결연관계"란 시와 외국도시간의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을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하는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3. "자매결연” 이란 군산시와 외국 도시 간의 우호교류협력이 ---------- 결연을 맺는 국제교류협력 관계---.
제4조(시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제4조(시장의 책무) ---------- 군산시(이하“시”라 한다)가 외국 도시와 ----------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등 교류협력을 통한 세계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스포츠·학술 및 경제·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및 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도시 간 협력 및 연대 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 협력기구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기구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③ 시장은 민간단체가 국제민간기구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화 전략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 방향
	2. 도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
	3.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교류 전략
	4. 민간 차원의 각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 및 국제 민간교류 네트워크 구축
	5. 국제통상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 방안
	6.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7.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6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시장은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매도시 또는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 2. 외국 도시 간 협력 및 연대 사업의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 기구 가입 및 새로운 기구의 창설 주도 3. 학술·문화·예술·관광·스포츠·경제산업·복지·교육·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 4. 민간단체 및 군산시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교육 등 국내·외 활동 지원 및 민간단체의 국제 민간기구 등 가입에 대한 행정적 지원 5. 청소년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국내·외 교류 활동 주관·지원 및 참가 6. 국제통상 및 관광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국제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국제대회의 유치) ① (생 략)	제8조(국제대회의 유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제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유치 가능성, 투자비용, 연관 파급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 투자비용, 연관 파급 효----------.
제7조(해외사무소 설치·운영) ① 시는 원활한 국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하여 외국 주요도시에 군산시해외사무소(이하 "해외사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국제교류협력사업의 지원)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외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시의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1.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 지원	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비영리 목적으로 시와 국제교류협력관계에 있는 외국 도시 또는 단체와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현지 시장 동향 수집·제공	3. 민간 차원에서 제6조제3호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통하여 시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관내 중소기업 등의 수출확대를 위한 시장조사·상담 및 지원활동	
4. 외국 기업의 관내 유치활동	
5. 시정 및 문화·관광의 해외홍보	
6. 해외교포와의 협조체제 구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해외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⑤ 시장은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해외사무소에 파견될 사람에 대한 파견방법 및 근무요령 등을 별도로 정한 사항 이외는「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⑦ 시장은 해외사무소에서 현지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국제관계 명예자문관 등 운영)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통상 업무추진 등을 위하여 외국 자매·우호협력도시 또는 교류가 필요한 지역과 국내에 군산시 국제관계 명예자문관 등(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삭 제>

② 제1항의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시의 국제교류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사람
2. 해외 해당도시의 유력인사
3. 글로벌 기업의 임원 등 경제인
4. 교민사회의 각종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고 재외공관과 협조 가능한 사람
5. 미주,유럽,일본, 중국 등 주요국 거주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
7. 그 밖에 투자유치, 해외시장 개척 활동 등 우리시 차원의 지방외교 및 통상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

③ 자문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시의 자문에 대하여 성실히 응한다.

1. 시의 해외홍보 지원
2. 외국 선진행정 사례 및 무역·해외시장 동향 등 주요정보 수

집・제공 3. 외국기관・기업・민간단체 등 도시간의 협력사업 지원 4. 각종 국제행사와 국제기구 유치에 적극적인 지원 5. 해외바이어 연결 등 통상사업 지원 6. 그 밖에 경제・문화・교육・기술 등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협력 ④ 자문관은 시와 관련한 직무수행에 있어 시의 민간외교관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의 이익에 위배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2. 자문관으로서 제3항 및 제4항의 직무를 소홀히 하여 시정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시장은 자문관의 자료수집, 정보제공, 해외홍보 등에 대하여 활동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시장은 업무협조 또는 국제행사 등을 위하여 자문관이 국내외로 출장할 때에는 항공료·체제비 등을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매도시 등)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협력도시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제9조(자매결연 등) ① ---------- ----------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우호협력 협정(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적용범위) 외국 도시와의 자매 결연과 우호교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적용범위) ---------- 자매결연 등---------- ---------- ---------- -.
제11조(결연 등의 제의) ① 시장은 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 제의	제11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① --- 외국 도시----------

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각종 기본 자료를 송부 받아 양도시의 행정규모, 지역여건, 교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송부받아 양 도시의 행정 규모, 지역 여건---------.
② 외국도시에 자매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교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외국 도시---------- 교류 여건----------.
③ 자매결연 등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③ ------ 등의 교류 여건---------.
1.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1. ----------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2. --- 지역 특수성 ----------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3. ---------- 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5. ---------- 특수 여건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2조(의회 의결 등)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제12조(의회 의결 등) ① ----- 외국 도시----------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군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제47조----------.
② 시장은 외국 도시와 우호교류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우호협력 협정을 ----------.
제13조(체결) 자매결연과 우호교류 체결은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조인식을 갖고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13조(체결) 자매결연 등 ------- 체결식을 갖고 협약서에 -------.
제14조(취소) 시장은 양 도시간에 교류 두절 등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 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매결연 취소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취소) ------- 도시 간---------- 발생 하거---------- 자매결연 등을 ----------. ----------.
제15조(교류사업의 내실화) 시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가 시의 국제화 촉진 및 지역경제·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교류사업의 내실화) ------ --------- 우호협력도시 ----- --------.
<신 설>	제4장 해외사무소 설치 및 명예자문관 운영
<신 설>	제17조(해외사무소 설치) ① 시장은

	원활한 국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하여 외국 주요 도시에 군산시해외사무소(이하 "해외사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외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 도시와 교류협력 지원 2. 현지 시장 동향 수집·제공 3. 관내 중소기업 등의 수출 확대를 위한 시장조사·상담 및 지원활동 4. 외국 기업의 관내 유치 활동 5. 시정 및 문화·관광의 해외 홍보 6. 해외 교포와의 협조체계 구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8조(해외사무소 운영) ① 시장은 해외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 간의 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소속 공무원 파견 등) ① 시장은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외사무소에 파견될 사람에 대한 파견 방법 및 근무 요령 등을 별도로 정한 사항 이외는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해외사무소에 현지 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명예자문관 위촉 및 자격)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통상업무 추진 등을 위하여 자매도시·우호협력도시 및 교류가 필요한 지역과 국내에 군산시 국제관계 명예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국제교류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사람 2. 해외 해당 도시의 유력인사

	3. 글로벌 기업의 임원 등 경제인 4. 교민 사회의 각종 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고 재외공관과 협조가 가능한 사람 5. 미주,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 거주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 7. 그 밖에 투자유치, 해외시장 개척 활동 등 시 차원의 지방외교 및 통상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신 설>	제21조(임기 및 해촉) ①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문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2. 자문관으로서 제22조 및 제23조의 직무를 소홀히 하여 시정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 설>	제22조(역할) 자문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시의 자문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시의 해외홍보 지원 2. 외국 선진행정 사례 및 무역·해외시장 동향 등 주요 정보 수집·제공 3. 외국 기관·기업·민간단체 등 도시 간의 협력사업 지원 4. 각종 국제행사와 국제기구 유치에 적극적인 지원 5. 해외 바이어 연결 등 통상사업 지원 6. 그 밖에 경제·문화·교육·기술 등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협력
<신 설>	제23조(품위유지) 자문관은 시와 관련한 직무수행에 있어 시의 민간 외교관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의 이익에 위배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신 설>	제24조(실비 보상 등) ①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사무

	와 관련하여 자문관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 요청하면 증빙서류를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은 제1항에 따라 발생된 경비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갖추어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 내용이 거짓이거나 증빙서류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6년 11월 9일000

군산시 조례 제2482호

군산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군산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를 “군산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을 개방하여”로,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군산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증진하고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유휴공간”을 “개방공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시설사용”을 “개방공간 사용”으로 한다.

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 중 그 설치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에게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실내·외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4.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개방공간에서 교육, 강연, 세미나, 공연, 행사, 문화·예술·체육·공동체활동 및 그 밖에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목적 또는 용도에 적합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중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휴공간”을 “시장은 개방공간”으로, “유휴공간을 지속적”을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개방하는 등”을 “공공시설의”로 한다.

제4조 중 “사용”을 “개방 및 사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유휴공간”을 “개방공간”으로,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을 “지장이 없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개방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개방시간, 관리부서, 사용조건, 사용료 및 그 밖에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 홈페이지 또는 개방공간 예약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개방공간의 위치, 규모, 용도, 주변여건 및 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세부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휴공간”을 “개방공간”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유휴공간”을 “개방공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개방공간의 종류, 시설 특성, 행사의 내용 등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기간·횟수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유휴공간”을 “개방공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개방시설”을 “개방공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시설의 안전관리, 소음, 교통 또는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에 별도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 중 “유휴공간”을 “개방공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사의 성격, 공익성, 시민 참여도 및 해당 시설의 설치목적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만 국가 및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나 사업에 포함된 영리행위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개방공간의 관리 또는 운영상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변경하거나 사용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유휴공간”을 “개방공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른 조례에서 해당 공공시설의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③ 개방공간의 신규 지정 또는 시설의 설치목적, 규모, 운영형태, 관리비용 및 이용여건의 변화 등으로 사용료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유휴공간”을 각각 “개방공간”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유휴공간”을 “개방공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유휴공간”을 “개방공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종료 후 발생한 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사용한 시설 및 그 주변을 청결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6조 중 “유휴공간”을 “개방공간”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료 (제12조 관련)

1. 실내 개방시설

공간명	면 적	사 용 료		비 고
		기준시간	금액	
회의실, 강당 등	33㎡이하	2시간 (초과시간당)	10,000원 (5,000원)	◦ 냉난방기를 가동할 때에는 시설의 공간별로 요금을 정하여 별도 부과
	34～165㎡이하		20,000원 (10,000원)	
	166～330㎡이하		30,000원 (15,000원)	
	330㎡초과		40,000원 (20,000원)	

① 사용료는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2시간 미만 사용 시에도 기준사용료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② 시설 및 설비의 설치·철거와 준비시간은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③ 주차장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주차장 이용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2. 실외 개방시설

시설 구분	사용료	비 고
야외공연장·야외무대·광장·버스킹장 및 그 밖에 시민의 이용을 위하여 개방하는 실외 공공시설	무 료	냉난방기, 전기, 수도, 조명 및 음향장비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 또는 이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군산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군산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군산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군산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 증진하고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유휴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 “시민”이란 유휴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 중 그 설치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에게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실내·외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 개방공간--------.

4.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개방공간에서 교육, 강연, 세미나, 공연, 행사, 문화·예술·체육·공동체활동 및 그 밖에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목적 또는 용도에 적합한 활동을 말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사용료”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 개방공간 사용 ----------.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휴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유휴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개방공간---------- ---------- -------- 개방공간을 지속적--- --------- 공공시설의 ------- ----------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 개방 및 사용---------- ---------- ----------.
제5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① 시장은 유휴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민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	제5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① ---- - 개방공간---------- -------- 지장이 없는 ------- ---------- ------. ---------- ----------

공간, 사용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며, 개방공간 예약시스템에 공지하는 것으로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개방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개방시간, 관리부서, 사용조건, 사용료 및 그 밖에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 홈페이지 또는 개방공간 예약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장은 개방공간의 위치, 규모, 용도, 주변여건 및 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세부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휴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격) ---------- 개방공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기간) 유휴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민교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사용기간) 개방공간----------. 다만, 개방공간의 종류, 시설 특성, 행사의 내용 등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기간·횟수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민이 유휴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인터넷 등을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 개방공간----------

통해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 - 개방공간----------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시설의 안전관리, 소음, 교통 또는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에 별도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우선사용) 시장은 유휴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9조(우선사용) ---- 개방공간--- ---------- --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사의 성격, 공익성, 시민 참여도 및 해당시설의 설치목적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 제외대상)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만 국가 및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나 사업에 포함된 영리행위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개방공간의 관리 또는 운영상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0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① ---------- ---------- -------- 경우에는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변경하거나 사용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사용료) 유휴공간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르며 사용자는 제13조에서 정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① 개방공간------ ---------- ---------- -.
<신 설>	② 다른 조례에세 해당 공공시설의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신 설>	③ 개방공간의 신규 지정 또는 시설의 설치목적, 규모, 운영형태, 관리비용 및 이용여건의 변화 등으로 사용료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로 정

	한다.
제1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휴공간을 1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단위로 분납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 -- -- 개방공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
1. 화재,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유휴공간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1. ---------- 개방공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사용자가 유휴공간을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잔여 사용일 각각에 대해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반환	3. ------ 개방공간---------- ----
제14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사용자는 유휴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제14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 개방공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의무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유휴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의무 등) ① ----------개방공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사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사용자는 사용종료 후 발생한 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사용한 시설 및 그 주변을 청결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유휴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 개방공간----------.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향교 · 서원전통문화의 계승 ·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6년 11월 9일

군산시 조례 제2483호

군산시 향교 · 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 · 향교 · 서원전통문화의 계승 ·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전통문화 계승 및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군산시 향교 ·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성균관 · 향교 · 서원전통문화의 계승 ·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 · 서원전통문화의 계승 ·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교 · 서원전통문화의 계승 ·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향교 · 서원전통문화의 계승 ·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및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 사업

2. 향교·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예절·인문·전통문화 교육 및 체험 등에 관한 사업

3. 향교·서원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시민 문화 향유 및 문화관광 연계·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 제9조에 따라 군산시 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장기적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발굴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협의체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산시의회의원
2. 군산시의 향교·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향교·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단체 대표자
4. 향교·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 교수 등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심의·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회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시장 및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장소・안건 등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 협의체 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은 심의・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6년 11월 9일

군산시 조례 제2484호

군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 효과를 지속·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확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확장하는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목표 및 성과
2. 도시재생 거점시설 및 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관리 계획
3. 도시쇠퇴 방지 대책
4.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평가체계 등 구체적인 점검계획
5.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 시장은 사후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협의와 군산시 도시재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마을거점시설 개보수 및 운영 사업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후관리 점검) ① 시장은 위원회와 센터를 통해 매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별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②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주민 의견 반영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9조(보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군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6년 11월 9일

군산시 조례 제2485호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별표 5에 따라 징수한 시설사용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 전액 반환
3.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시설사용료의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중 체육시설업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5에 따라 징수한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전액 반환 2. 군산시의 행사 또는 박물관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이 어렵게 된 때 전액 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에는 전액 반환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액반환 5.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3일 이내 또는 사용예정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에는 징수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5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별표 5에 따라 징수한 시설사용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 전액 반환 3.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시설사용료의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중 체육시설업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6년 11월 9일

군산시 조례 제2486호

군산시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란 신청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병원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가족·보호자 등의 동행 지원을 받기 어려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65세 미만의 1인 가구 구성원

   다. 그 밖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병원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병원동행서비스”란 이용자가 진료 등을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동행매니저”란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병원동행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병원동행서비스가 보건·의료·복지 등 지역 돌봄 관련 사업과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출발지에서 병원까지의 이동 및 귀가 동행
2. 병원 내 접수·수납·진료·검사 등의 동행
3. 처방전에 따른 약국 이용 및 처방약 수령
4.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보호자 등에 대한 서비스 이용결과 안내
5. 그 밖에 병원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병원동행서비스의 신청절차, 이용시간·횟수·요금 및 그 밖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동행매니저의 자격) 동행매니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4.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5. 「간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병원동행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병원동행서비스의 제한 및 중지) ① 시장은 이용자가 병원동행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원동행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건강상태로 인하여 의료인의 도움 없이 안전한 이동이나 동행이 어려운 경우

2. 이용자의 폭언·폭행 등으로 동행매니저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안전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병원동행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인력과 수행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수행기관에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① 시장과 수행기관은 병원동행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와 동행매니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행기관은 병원동행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이용자와 동행매니저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 시장, 수행기관 및 동행매니저는 병원동행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6년 11월 9일

군산시 조례 제2487호

군산시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장애인·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이동 편의 증진과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이용자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보험회사 선정 등) ①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보험금 청구 및 지급) ① 이용자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이용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 등을 확인하여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이용자가 사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시 이외의 주소인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6년 11월 9일

군산시 조례 제2488호

군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백일해 : 최근 10년 이내에 접종하지 않은 사람 중 1회(다만, 임산부의 경우에는 임신할 때마다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목”을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각 목”으로, “사람으로”를 “사람(다만,”으로, “제외”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목”을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종사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백일해 :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

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고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산모 및 배우자

제5조제1항 중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 종류 및 기준)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지원 종류 및 기준)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백일해 : 최근 10년 이내에 접종하지 않은 사람 중 1회 (다만, 임산부의 경우에는 임신할 때마다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대상자) 선택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지원 대상자) ---------- 다음 ----------.
1. 대상포진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와 예방접종 금지자는 제외	1. --------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각 목---------- 사람(다만, ---------- 제외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인플루엔자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각 목---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및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	아.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종사자 ----------
자. ~ 타. (생 략)	자. ~ 타. (현행과 같음)
<신 설>	3. 백일해 :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 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고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산모 및 배우자
제5조(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 ① 예방접종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되,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 ① ---------- ---------- ---------- 경우에는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6년 11월 9일

군산시 조례 제2489호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8 제3호 중 “나목을”을 “나목(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같은호 나목을 제외한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같은호 나목(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 및 햇빛소득마을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6년 11월 9일

군산시 조례 제2490호

군산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 및 햇빛소득마을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과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2.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이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지분 또는 채권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그 편익을 공유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주민조합"이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 또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을 중심으로 설립하거나 구성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4. "햇빛소득마을"이란 주민조합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그 수익을 공유하는 마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햇빛소득마을로 선정한 마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군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과 연계하여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 및 햇빛소득마을 조성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사업 수요 및 후보지
2. 주민조합의 육성·교육 및 지원
3. 재원조달 및 발전수익 활용
4. 발전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의 보급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2. 주민조합의 설립에 관한 상담 및 교육
3. 법률·회계·금융 상담 및 공모사업 신청 지원
4.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5. 발전수익을 활용한 마을공동사업
6. 그 밖에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주민조합으로 한다. 다만, 주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민에게는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주민 참여와 의사결정의 민주성, 사업의 실현 가능성, 수익 활용의 투명성, 안전관리 및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

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 선정기준 및 지원 규모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자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군산시에너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2. 지원사업의 추진 및 개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지 아니한다.

제8조(현장지원 및 협력) ① 시장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민상담소를 사업 상담·수요 발굴 창구로 활용하고, 주민자치회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 도, 공공기관, 전기사업자, 금융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9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시장은 사업부지 확보 및 전력계통 연계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및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임대기간에 관하여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의 산정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10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도 사업과 연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조합이 사업비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사업규모, 주민 참여 정도, 자부담 능력 및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재원조달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금융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조건) ① 시장은 재정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이거나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교부조건 또는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내용, 지원 대상・기간・방법 및 주민 재원조달 계획
2. 발전수익의 활용과 정보공개 및 지역사회 환원 의무
3. 안전관리, 보험 및 유지보수 의무
4. 사업 중단, 지원 취소 및 보조금 반환 등 사항

③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주민조합이 정관에 따른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발전수익 활용계획을 마련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 운영과 수익 활용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교부조건 또는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발전수익의 활용과 지원금의 취소·반환은 관계 법령, 정관 및 적법한 교부조건 또는 협약에 따른다.

제12조(중복지원 금지 등) ① 시장은 동일한 사업・비용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 또는 도 사업지침에서 지방비 부담 또는 연계지원을 요구・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0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점검) 시장은 관계 법령과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사업의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세부 기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6년 11월 9일

군산시 조례 제2491호

군산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세부 기준에 관한 조례

군산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세부 기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2.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3. “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사업소의 이전”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4조(허가의 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의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세부 기준(제4조 관련)

구 분	허 가 기 준	
공통사항	허가 대상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타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시설 기준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거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가목1)가)에서 정한 기준의 2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소의 부지는 차량 진·출입로가 접한 경계면이 폭 16m이상인 도로와 접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시설 기준	1. 용기보관실, 사무실, 용기보관실의 주위 부지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가.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으로 한다. 나.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한다. 다.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사업소의 부지는 차량 진·출입로가 접한 경계면이 폭 8m 이상인 도로와 접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사업소가 이전하는 경우 폭 6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부지로 이전할수 있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6년 11월 9일

군산시 조례 제2492호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업보조인”이란 센터 내 사용자의 영업에 관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점포에 관한 권리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 양도, 담보 설정,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제12조 앞의 “제3장 운영위원회 및 상인회”를 삭제한다.
제18조 앞의 “제4장 사용료 및 운영관리비”를 삭제한다.
제22조 앞의 “제5장 사고·위생·화재예방”을 삭제한다.
제28조 앞의 “제6장 지도·감독”을 삭제한다.
제36조를 제38조로 하고, 제34조를 제36조로 하며, 제32조를 제34조로 하고, 제30조를 제32조로 하며, 제28조를 제30조로 하고, 제26조를 제28조로 하며, 제24조를 제26조로 하고, 제22조를 제24조로 하며, 제20조를 제22조로 하고, 제18조를 제20조로 하며, 제16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4조를 제16조로 하며, 제12조를 제14조로 한다.

제37조를 제39조로 하고, 제35조를 제37조로 하며, 제33조를 제35조로 하고, 제31조를 제33조로 하며, 제29조를 제31조로 하고, 제27조를 제29조로 하며, 제25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3조를 제25조로 하며, 제21조를 제23조로 하고, 제19조를 제21조로 하며, 제17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5조를 제17조로 하며, 제13조를 제15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며,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직접 영업)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점포를 직접 영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대리 영업을 할 수 없다.

제8조(영업보조인) ① 시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일시적인 부재가 발생할 경우를 고려하여, 영업보조인을 승인할 수 있다. 단, 사용자가 사전에 영업보조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식사, 용변, 건강관리 등 일상적 필요에 따른 휴식
2. 수산물 매입, 작업, 배송 등 점포 영업과 관련한 활동
3. 응급의료 또는 통원치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질병, 수술, 입원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일정 기간 연속으로 직접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영업보조인을 통하여 점포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의2(영업보조인의 신청)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영업보조인 1명을 지정하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배우자
2. 사용자의 부모
3. 사용자의 자녀
4. 사용자의 형제・자매

② 사용자는 제4조에 따라 점포 사용허가를 연장할 경우에는 영업보조인에 대한 승인을 새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의3(영업보조인의 의무) ① 영업보조인은 사용자의 책임・지휘・감독 아래 센터 내 사용자의 영업을 보조하는 업무만 수행해야 한다.

② 영업보조인 승인은 사용자의 점포 사용권 및 영업권 등을 이전・분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③ 영업보조인은 사용자의 점포만 보조할 수 있다.

④ 제8조에 따라 영업보조인이 응대할 때에는 반드시 자신이 영업보조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부재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8조의4(영업보조인의 변경) ① 사용자는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없이 승인된 영업보조인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영업보조인의 승인 만료일은 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제4조에 따른 사용자의 허가기간까지로 둔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업보조인에서 승인 해제된 자는 해제된 날로부터 제4조에 따른 사용자의 허가기간까지 영업보조인으로 재신청할 수 없다. 단, 제8조의2 제2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종전의 제9조) 제1항제1호 중 “제6조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를 “제6조에서 제8조의4까지 또는 그 외”로 한다.

제1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및 상인회

제2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사용료 및 운영관리비

제2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사고・위생・화재예방

제3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지도・감독

별표의 내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사용료(제20조 관련)

1. 사용료 요율

구분	대상	분류	기준	재산가격 적용기준	적 용 요 율
수산물 종합센터	본관동 (1층)	토지	년/㎡당	개별 공시지가	1,000분의 50
		건물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1,000분의 60
	본관동 (2층)	토지	〃	개별 공시지가	1,000분의 20
		건물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1,000분의 20
	건어동	토지	〃	개별 공시지가	1,000분의 50
		건물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1,000분의 60

가. 수산물종합센터 전체(본관동, 건어동)를 포함하여 임대료 산출기준을 정하고 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징수한다.

나. 점포 공용면적은 점포 전용면적의 30%를 적용한다.

다. 점포별 부지면적은 총 건축면적 × (점포별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건물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을 적용한다.

라. 점포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제3조(정의) ----------.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영업보조인”이란 센터 내 사용자의 영업에 관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점포에 관한 권리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 양도, 담보 설정,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허가받은 점포를 직접 영업하여야 하고, 가족 및 직원을 통해 대리 영업할 수 없다.	제6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점포에 관한 권리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 양도, 담보 설정,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신 설>	제7조(직접 영업)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점포를 직접 영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대리 영업을 할 수 없다.
<신 설>	제8조(영업보조인) ① 시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일시적인 부재가 발생할 경우를 고려하여, 영업보조인을 승인할 수 있다.

	단, 사용자가 사전에 영업보조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식사, 용변, 건강관리 등 일상적 필요에 따른 휴식 2. 수산물 매입, 작업, 배송 등 점포 영업과 관련한 활동 3. 응급의료 또는 통원치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질병, 수술, 입원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일정 기간 연속으로 직접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영업보조인을 통하여 점포를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2(영업보조인의 신청)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영업보조인 1명을 지정하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배우자 2. 사용자의 부모 3. 사용자의 자녀 4. 사용자의 형제·자매 ② 사용자는 제4조에 따라 점포 사용허가를 연장할 경우에는 영업보조인에 대한 승인을 새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의3(영업보조인의 의무) ① 영업보조인은 사용자의 책임·지휘·감독 아래 센터 내 사용자의 영업을 보조하는 업무만 수행해야 한다. ② 영업보조인 승인은 사용자의 점포 사용권 및 영업권 등을 이전·분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③ 영업보조인은 사용자의 점포만 보조할 수 있다. ④ 제8조에 따라 영업보조인이 응대할 때에는 반드시 자신이 영업보조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부재사유를 알려야 한다.
<신 설>	제8조의4(영업보조인의 변경) ① 사용자는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없이 승인된 영업보조인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영업보조인의 승인 만료일은 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제4조에 따른 사용자의 허가기간까지로 둔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업보조인에서 승인 해제된 자는 해제된 날

	로부터 제4조에 따른 사용자의 허가기간까지 영업보조인으로 재신청할 수 없다. 단, 제8조의2 제2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조·제8조 (생 략)	제9조·제10조 (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
제9조(허가취소 및 재계약 불허) 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 또는 재계약을 불허할 수 있다. 1. 제6조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할 때 2. ~ 8. (생 략) ② (생 략)	제11조(허가취소 및 재계약 불허) ① ---------- ---------- ---------- -. 1. 제6조에서 제8조의4까지 또는 그 외 ----- 2.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제11조 (생 략)	제12조·제13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삭 제>
제3장 운영위원회 및 상인회	제3장 운영위원회 및 상인회
<신 설>	
제12조 ~ 제17조 (생 략)	제14조 ~ 제19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삭 제>
제4장 사용료 및 운영관리비	제4장 사용료 및 운영관리비
<신 설>	
제18조 ~ 제21조 (생 략)	제20조 ~ 제23조 (현행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
	<삭 제>
제5장 사고·위생·화재예방	제5장 사고·위생·화재예방
<신 설>	

제22조 ~ 제27조 (생 략)	제24조 ~ 제29조 (현행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와 같음)
제6장 지도·감독	<삭 제>
<신 설>	제6장 지도·감독
제28조 ~ 제37조 (생 략)	제30조 ~ 제39조 (현행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와 같음)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6년 11월 9일

군산시 조례 제2493호

군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7조(관리수탁자의 의무)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개발사업 시설물의 일상적인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세, 통신비 및 수도세 등의 공과금, 관리 소홀로 인한 과태료 등의 비용 및 기타 제반 비용은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삭 제>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6년 11월 9일

군산시 조례 제2494호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을 “사용하려는 농업인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대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농업인은 시장이 실시하거나 인정하는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장은 수리지원사업에 대하여 해당연도 매 1월 말까지 농업기계 수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실제 안전사고 사례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기종별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에 관한 안전교육
3. 여성농업인 및 고령 농업인 대상 전문 안전교육
4. 중소형 농업기계의 상하차 등 실습 안전교육
5. 그 밖에 농업기계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임대 및 임대료) ① 농업기계를 임대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기계임대 신청 후 승인이 되면 임대료를 납부하고 임대농업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임대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임대 및 임대료) ① ---------- 사용하려는 농업인은 ----------.
<신 설>	② 임대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농업인은 시장이 실시하거나 인정하는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17조(수리 및 수리비) ① 농업기계수리지원사업은 당해연도 매1월 말까지 농업기계 수리 및 농업기계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소장의 책임 하에 시행하여야한다.	제17조(수리 및 수리비) ① 소장은 수리지원사업에 대하여 해당연도 매 1월 말까지 농업기계 수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실제 안전사고 사례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기종별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에 관한 안전교육 3. 여성농업인 및 고령 농업인 대상 전문 안전교육 4. 중소형 농업기계의 상하차 등 실습 안전교육

	5. 그 밖에 농업기계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